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1)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2회(1차정례회)

2023.06.02.(금)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검토사항》

- 조례안 7건
(제정4건, 개정3건)
-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성남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출자: 윤혜선 의원 등 20명
- 의안번호: 제5151호

2. 제안이유

-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자 중심 인프라 개선 및 참여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헌혈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헌혈의 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 제4조의3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 기 타
 - 입법예고(2023. 05. 04. ~ 05. 11.):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의견
 -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개정안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 적십자사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남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헌혈장소 설치 지원이 공공청사 내 제공할 경우, 혈액관리법에서 정한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사무실 공간 부족문제가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적 설치장소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검토의견 67~68쪽 참조)

개정안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공무원이라는 특정 직업군을 헌혈 장려대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혈액관리법 및 기타 지침 등 근거가 없으며, 조례 적용대상의 평등과 공평적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검토의견 6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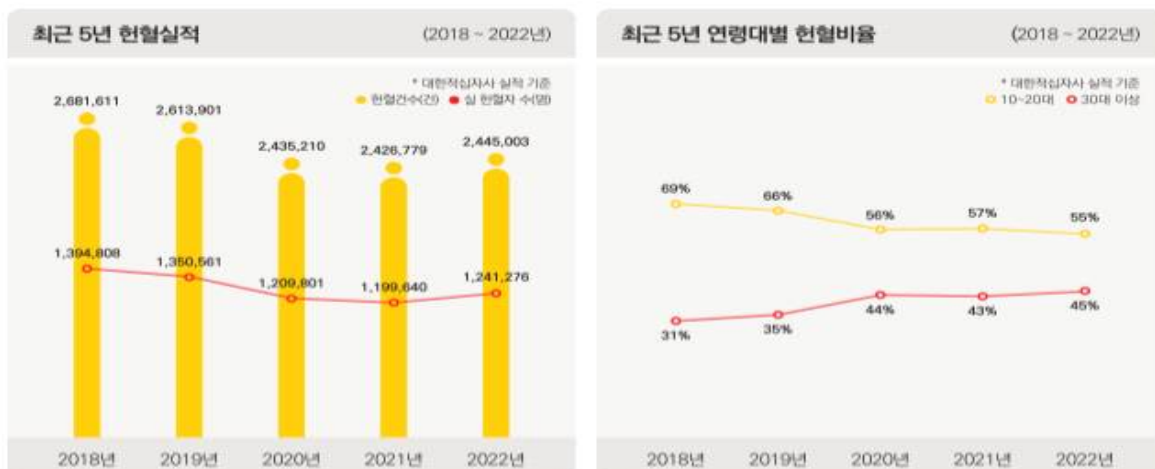
5. 집행기관 의견: 동의

6.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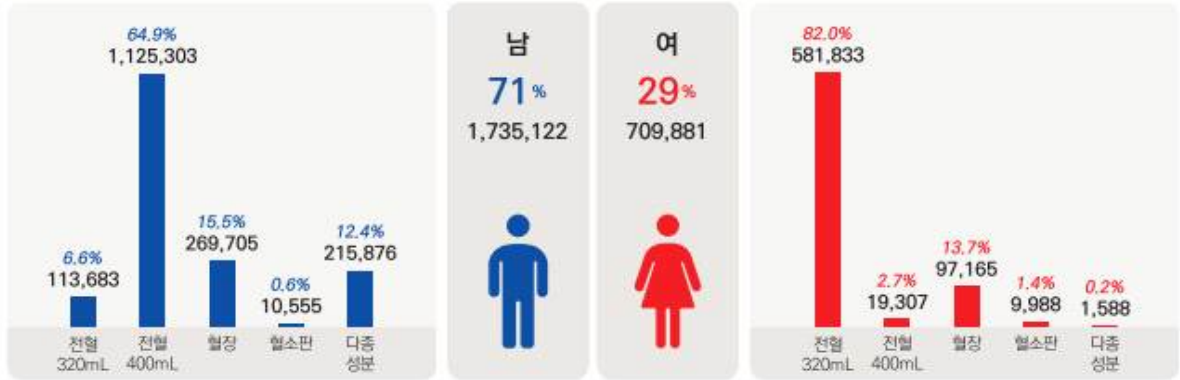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헌혈현황 (단위: 건)





방법별 헌혈현황 (단위: 건)



○ 참고적으로 대한적십자 실적 기준 헌혈현황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 줄곧 감소해오던 헌혈 실적은 2022년 2,445,003건(국민 헌혈률 4.75%)으로 2021년 대비 18,224건(0.8%) 증가하였음.

이는 선진국인 미국의 3.9%(2015년), 프랑스 2.4%(2016년), 핀란드 3.7% (2016년), 싱가포르 2.2%(2016년) 보다 높은 수치임.

나.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안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는 개정조례안에 신규 추가되는 내용으로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함.

개정안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각 호

1. 성남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장소별 헌혈현황 (단위: 건)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 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에 근거함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④항 생략

- 안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에는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헌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에는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 근거하여 있음.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제1조 현행 목적이 규정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근거하여 안 제7조의 개정안에 헌혈 장려를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공무원 또는 시민의 역할을 담고 있음.

- 개정조례안에 따라 헌혈의 달을 지정 할 경우 헌혈 권장 기간 증가에 따라 헌혈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성남시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시민----- -----. 2. ----- 시민----- -----. 3. (현행과 같음)
<p>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 ----- ---시민----- -----.</p>

현행	개정안
<p>제4조(헌혈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4조(헌혈장려계획의 수립) ① ----- 시민-----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남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p>제5조 (생략)</p> <p>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제8조 (현행 제5조와 같음)</p> <p>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시민-----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 ~ 제13조 (생략)</p> <p>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신설></p> <p>(생략)</p> <p>제15조(생략)</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0.25.></p>	<p>제10조 ~ 제16조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p> <p>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헌혈권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 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제17조(현행 제15조와 같음)</p> <p><삭제></p>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음.
- 현재 성남시에서는 헌혈사업 중 단체헌혈과 관련된 사항만 수행하고 있고, 헌혈 캠페인, 각종 언론보도 홍보사업 등 실질적인 헌혈장려사업 및 지원 등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남부혈액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려하는 등 혈액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범시민적 헌혈 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의 의의가 크다 하겠으나, 향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사업도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효과가 발생할 것임.

참고1

성남시 헌혈 실적(2023. 3월 기준)

□ 성남시 헌혈 및 상품권배부 실적 (2023.3월까지 기준)

구분	헌혈 실적			상품권 지급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3월)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29,997	36,111	10,299	24,251	10,299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미음혈액원	14,205	16,038	4,534	11,309	4,435
합계	44,202	51,823	14,833	35,560	14,734

**헌혈자 예우 : 2022. 5.10.부터

※ 성남시 인구수 대비 헌혈률

구분	2021년			2022년		
	헌혈실적(건)	헌혈률(%)	인구수(명)	헌혈실적(건)	헌혈률(%)	인구수(명)
합계	44,202	4.74%	93.1만명	51,823	5.6%	92.3만명

※출처KOS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2

전국 헌혈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헌혈실적(건)	헌혈률(%)	인구수(명)	헌혈실적(건)	헌혈률(%)	인구수(명)
합계	2,611,401	5.0	51,829,023	2,604,437	5.0	51,638,809
서울	818,973	8.5	9,668,465	799,823	8.4	9,509,458
부산	197,340	5.8	3,391,946	194,845	5.8	3,350,380
대구·경북	196,451	3.9	5,057,768	225,446	4.5	5,012,021
인천	165,203	5.6	2,942,828	166,856	5.7	2,948,375
경기	226,280	1.7	13,427,014	226,112	1.7	13,565,450
강원	140,670	9.1	1,542,840	134,293	8.7	1,538,492
충북	85,748	5.4	1,600,837	84,573	5.3	1,597,427
대전·세종·충남	238,871	6.1	3,940,742	233,482	5.9	3,943,403
전북	102,770	5.7	1,804,104	102,943	5.8	1,786,855
광주·전남	183,181	5.5	3,301,611	185,340	5.7	3,274,414
경남	131,089	3.9	3,340,216	124,647	3.8	3,314,183
울산	83,152	7.3	1,136,017	84,042	7.5	1,121,592
제주	41,673	6.2	674,635	42,035	6.2	676,759

※출처KOS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관계법령 발췌서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중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에서 이동, 중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9.>]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21. 6. 15.]

[중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 6. 15.>]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 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조에서 이동 <2021. 6. 15.>]